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789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78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8534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6. 7. 13.

판결 선고 2016. 8. 26.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58534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761,707원 및 그 중 56,358,228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1.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13. 7. 4.자 증여계약을 147,232,86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 2) 피고 C은 원고에게 147,232,86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9 내지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4면 표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한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897,032,796원을 회수하여서 잔존대위변제금은 56,358,228원(= 953,391,024원 - 897,032,796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70,403,479원이다.

2014. 4. 29.	328,968,781	2014. 4. 8. - 2014. 4. 29.	22	12	2,379,390
2014. 4. 30.	65,138,141	2014. 4. 8. - 2014. 4. 30.	23	12	492,551
2014. 6. 30.	50,000,000	2014. 4. 8. - 2014. 6. 30.	84	12	1,380,821
2014. 9. 3.	65,000,000	2014. 4. 8. - 2014. 9. 3.	149	12	3,184,109
2014. 11. 28.	50,000,000	2014. 4. 8. - 2014. 11. 28.	235	12	3,863,013
2014. 12. 31.	50,000,000	2014. 4. 8. - 2014. 12. 31.	268	12	4,405,479
2015. 3. 31.	49,126,590	2014. 4. 8. - 2015. 3. 31.	358	12	5,782,132
2015. 6. 30.	50,000,000	2014. 4. 8. - 2015. 6. 30.	449	12	7,380,821
2015. 9. 30.	50,000,000	2014. 4. 8. - 2015. 9. 30.	541	12	8,893,150
2015. 12. 31.	44,546,014	2014. 4. 8. - 2015. 12. 31.	633	12	9,270,452
2016. 3. 31.	44,253,270	2014. 4. 8. - 2016. 1. 31.	664	12	9,660,549
2016. 2. 1. - 2016. 3. 31.	60	10	727,451		
2016. 6. 30.	50,000,000	2014. 4. 8. - 2016. 1. 31.	664	12	10,915,068
2016. 2. 1. - 2016. 6. 30.	151	10	2,068,493		
합계	897,032,796		70,403,479		

』

○ 제4면 [인정 근거]에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구상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761,707원(= 잔존 대위변제금 56,358,228원 + 확정지연손해금 70,403,479원) 및 그 중 56,358,22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1.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라.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부분을 아래와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11. 17.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35,000,000원인 사실, 또한 2011. 10. 28.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15,037,800원인 사실, 피고 C은 위 증여계약 이후 위 2011. 10. 28.자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5. 7. 23.을 기준으로 29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가액인 292,000,000원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50,037,800원(= 15,037,800원 + 35,000,000원)을 공제하면 241,962,200원이 된다.

한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액은 당시 변론 종결일 현재 합계 147,232,867원[= 126,761,707원 + 12,303,078원[= 56,358,228원 × 664일(2014. 4. 8. - 2016. 1. 31.) / 365 × 연 12%] + 8,168,082원[= 56,358,228원 × 529일(2016. 2. 1.부터 2016. 7. 13.) / 365 × 연 10%1)]]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인 241,962,200원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당시 변론종결일 현재 채권액 147,232,867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채권액 147,232,8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147,232,8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시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정석종

판사조진구

별지

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다.